

첫째,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들 수 있다. 공고는 설립당초부터 절차를 가능한 간단히 하여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고대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대부는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기채허가를 얻은 사업을 대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에서는 대부대상사업의 채산성 혹은 차입선의 상환능력 등에 관한 심사는 기채허가의 단계에서 이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행하지 않고 지방채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자치단체가 차입을 희망하는 시점에서 자금수요가 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부를 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대부의 경우는 기채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상환전망 등의 심사를 행하여 대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차입을 행하는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및 대부절차 등에 있어서 간소화 및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

둘째, 간소한 조직 및 도도부현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공고의 구성정원은 인

건비에 의한 자금조달 코스트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즉 사무소는 1개소를 두고 지점은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금규모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도부현, 시정촌등 3,000이상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의 대부, 관리 및 회수 사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행하기 위하여 원리금의 회수사무의 일부를 도시은행 및 지방은행에 위탁함과 동시에 도부현에 대해서는 시정촌에 관한 대부사무의 지도 및 대부금의 비도상황 등의 조사사무 일부를 의뢰하는 등 협력에 의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원활하고도 적절하게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이루고 있다.

3. 공고의 역할 및 업무

가. 대부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부대상사업은 <표 1>과 같이 설립당초의 9개사업에서 점차 확대되어 1978년도부터는 임시지방도로사업, 임시하천정비사업 및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의 보통회계에 속하는 3개 사업이 추가되어 합계 20개 사